

『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의 상위법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
- 박물관자료 수집(구입, 기증, 기탁, 대여 등)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‘유물’을 ‘자료’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~제8조, 제11조~제14조)
-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서 삭제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한정된 범위를 나타내는 ‘유물’ 대신 광의의 ‘박물관자료’로 용어를 정비하고,
- 박물관 개관 이후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자료수집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는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